



의안번호	제 2023 - 4호
보 고 연 월 일	2023. 2. 13. (제122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라 각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1. 살인범죄 양형기준	1
가. 양형인자표	1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1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2
2. 뇌물범죄 양형기준	3
가. 양형인자표	3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3
다. 집행유예 기준	4
3. 성범죄 양형기준	5
가. 양형인자표	5
나. 유형의 정의 및 공통원칙	5
4. 강도범죄 양형기준	6
가. 양형인자표	6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7
다. 집행유예 기준	8
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8
가. 양형인자표	8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8
다. 집행유예 기준	9
6.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10
가. 양형인자표	10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10
다. 집행유예 기준	12
7. 무고범죄 양형기준	13
가. 양형인자표	13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13
다. 집행유예 기준	14
8.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14
가. 양형인자표	14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16
다. 집행유예 기준	16
9. 사기범죄 양형기준	17
가. 양형인자표	17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17
다. 집행유예 기준	18
10. 절도범죄 양형기준	19
가. 양형인자표	19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20
다. 집행유예 기준	20
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21
가. 양형인자표	21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22
다. 집행유예 기준	22
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23
가. 양형인자표	23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24
다. 집행유예 기준	24
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25

가. 양형인자표	25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25
다. 집행유예 기준	26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27
가. 양형인자표	27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28
다. 집행유예 기준	28
15. 마약범죄 양형기준	30
가. 양형인자표	30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31
다. 집행유예 기준	31
16.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32
가. 양형인자표	32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33
다. 집행유예 기준	34
1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36
가. 양형인자표	36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37
다. 집행유예 기준	38
18. 폭력범죄 양형기준	38
가. 양형인자표	38
나. 공통원칙	39
다. 집행유예 기준	40
19. 선거범죄 양형기준	40
가. 양형인자표	40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41
다. 집행유예 기준	44

20. 조세범죄 양형기준	45
가. 양형인자표	45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46
다. 집행유예 기준	47
21. 공갈범죄 양형기준	48
가. 양형인자표	48
나. 공통원칙	49
다. 집행유예 기준	49
22. 방화범죄 양형기준	50
가. 양형인자표	50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51
다. 집행유예 기준	51
23.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52
가. 양형인자표	52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53
다. 집행유예 기준	54
24.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54
가. 양형인자표	54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55
다. 집행유예 기준	55
25.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56
가. 양형인자표	56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57
다. 집행유예 기준	58
26.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59
가. 양형인자표	59
나. 공통원칙	60

다. 집행유예 기준	61
27. 장물범죄 양형기준	62
가. 양형인자표	62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63
다. 집행유예 기준	63
28.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64
가. 양형인자표	64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65
다. 집행유예 기준	65
29.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67
가. 양형인자표	67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67
다. 집행유예 기준	69
30. 손괴범죄 양형기준	70
가. 양형인자표	70
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71
다. 집행유예 기준	71
31.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72
가. 양형인자표	72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73
다. 집행유예 기준	73
3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74
가. 양형인자표	74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74
다. 집행유예 기준	75
33.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77
가. 양형인자표	77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77
다. 집행유예 기준	79
3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79
가.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79
나. 집행유예 기준	80
35.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80
가. 양형인자표	80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81
다. 집행유예 기준	82
36.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83
가. 양형인자표	83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83
다. 집행유예 기준	85
37.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86
가. 양형인자표	86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87
다. 집행유예 기준	89
38.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90
가. 양형인자표	90
나. 공통원칙	90
다. 집행유예 기준	90
39.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91
가. 양형인자표	91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91
다. 집행유예 기준	92
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92
가. 양형인자표	92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93
다. 집행유예 기준	93
4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94
가. 양형인자표	94
나. 유형의 정의	95
다.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96
4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96
○ 공통원칙	96
43. 환경범죄 양형기준	96
○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96



1. 살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16¹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지미수 ● 피해자 유발(강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 중한 상해 ● 피해 회복 없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위험한 물건 휴대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교정 ● 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뇌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뇌물수수

구분		감정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02¹ 뇌물공여

구분		감정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뇌물수수¹⁾

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02¹ 뇌물공여

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기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다. 증뢰물 전달

따.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3급 이상 공무원 ●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교령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2¹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구분	부정적	긍정적
	관련된 경우	등)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뇌물공여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3.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 범인 경우(3, 4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2, 3유형 3, 4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나머지 각 양형인자표

- 언어장애인 → 언어V장애인

나. 유형의 정의 및 공통원칙

[유형의 정의]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4. 강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자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04¹ 상습·누범강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12¹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¹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반복적 범행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6.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 위증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02 | 증거인멸·증인은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 위증

자.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증거인멸·증인은너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라.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바. 마.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위증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교령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증거인멸·증인은닉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지엄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교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7. 무고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동종 누범(중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7¹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¹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8.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

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03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04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상해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교량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9. 사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02¹ 조직적 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
까지로 계산한다.

10. 절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03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흥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피해 경미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
까지로 계산한다.

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02¹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03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²⁾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손해가 경미한 경우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진지한 반성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 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사문서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02¹ 허위진단서 등 작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교령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02¹ 공용물무효·파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03¹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교정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진지한 반성
 -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허위표시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02¹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03¹ 부정의료행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	------	------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허위표시³⁾

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허위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가족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 | 부정의료 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15. 마약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투약·단순소지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02¹ 매매·알선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03¹ 수출입·제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04¹ 대량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아교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

구분	부정적	긍정적
		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6.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02 |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⁴⁾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금융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02¹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파.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인 교량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요구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융기관 임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재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증재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교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
까지로 계산한다.

1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02¹ 저작권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03¹ 영업비밀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04¹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18. 폭력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적인 상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자	● 청각 및 언어 ▽ 장애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 인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및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2¹ 특수상해·누범상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ㅂ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및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3¹ 폭행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ㅂ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및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4¹ 협박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ㅂ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및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19. 선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매수 및 이해유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V 책임 없음)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매수 및 이해유도⁵⁾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집행 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나.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라.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따. 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빠. 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마.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차. 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차.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카.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마.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매수 및 이해유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교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교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교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에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20. 조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 조세포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02¹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03¹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어·축·수산물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04¹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어·축·수산물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일반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⁶⁾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6)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조세포탈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기도 못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21. 공갈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 일반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2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미합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22. 방화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03¹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약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일반적 기준⁷⁾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7)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 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중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3.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배임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02¹ 배임증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	--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배임수재⁸⁾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배임증재

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라 바**'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8) 배임증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증재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4.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02¹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⁹⁾

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9)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2¹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5.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 알선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02¹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형)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

구분	부정적	긍정적
		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26.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2¹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생략)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3¹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생략)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V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생략)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체포·감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2¹ 유기·학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3¹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27. 장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장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02¹ 누범장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거.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너.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28.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요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강요¹⁰⁾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강요

10)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 까지로 계산한다.

29.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업무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경매·입찰 방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¹ 경매·입찰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업무방해¹¹⁾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경매·입찰방해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나.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11) 경매·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경매·입찰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30. 손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¹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2¹ 누범·특수손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¹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3¹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¹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재물손괴 등에 한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경미한 상해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31.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도박장소 개설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02¹ 불법 스포츠도박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03¹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04¹ 불법게임물 등 유통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05¹ 무허가·무등록 영업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아.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참작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악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
까지로 계산한다.

3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 동종 누범

02¹ 임금 등 미지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3¹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임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3.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

02¹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01¹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¹²⁾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기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가. 단순 가담

다. 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라. 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라.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3¹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

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3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1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제6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나. 집행유예 기준

01¹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5.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도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누범

02¹ 범인은닉·도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도주¹³⁾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범인은닉·도피

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다.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라.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3) 범인은닉·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인 교량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02¹ 범인은닉·도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어 교량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6.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 통화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02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03 |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¹⁴⁾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부정수표 발행 등

따.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14) 부정수표 발행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통화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인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소극 가담

구분	부정적	긍정적
반 참 작 사 유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파코인아코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 |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파코인아코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7.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 대부업법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02¹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대부업법위반¹⁵⁾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¹ 채권추심법위반

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5) 채권추심법위반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바. 다. 처벌불원

사.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아.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대부업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참작 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인 교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인 교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8.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¹장애인 ● 심신미약(본인¹책임 없음) ● 자수 및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02¹ 모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¹장애인 ● 심신미약(본인¹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생략)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균형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자수

02 | 모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9.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를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가담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아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동종 누범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03¹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04¹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05¹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나. 유형의 정의

[유형의 정의]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 제3유형(배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아동·청소년 알선)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구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거.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4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 공통원칙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43. 환경범죄 양형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¹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